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허법원 심판권 확대 등〉

■ 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851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특허법원 심판권 확대	2
2. 특허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범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10.
3. 회 부 일 : 2025.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술 유출·침해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원에서 신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관련 민사 본안소송 항소심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반면, 지재권 민사가처분 사건, 지식재산 형사소송과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무역위 처분 및 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특허법원으로 관할이 집중되어 있지 않아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분쟁해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법원인 특허법원 중심의 지식재산 소송 항소심 관할집중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법원조직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 민사본안소송 항소심, 민사가처분 사건 항고심의 관할을 모두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되, 민사본안소송 항소심의 관할집중은 「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안번호 221285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에 따른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산업재산 및 기술안보 관련 8개 법률의 지식재산권 등을 대상으로 하고, 민사가처분 사건 항고심의 관할집중은 민사집행법 제303조제2항(의안번호 221285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에 따른 사건의 항고사건을 대상으로 함(안 제28조, 안 제28조의4제2호·제3호 및 안 제32조제2항).

나.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조의2 각 호(의안번호 22128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위반 사건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의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되, 「형사소송법」 제4조의2(의안번호 22128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에 따른 법원(중복관할 법원이 인정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외의 법원(현행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른 토지관할 법원)에서 재판한 사건의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8조제5항(의안

번호 22128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에 따라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이송된 사건에 한하여 특허법원으로 집중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28조, 안 제28조의4 제4호 및 안 제32조제2항).

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사건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이들 법률에 근거한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의 경우에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28조, 안 제28조의4 제5호 및 제6호, 안 제32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특허법원 심판권 확대

- 개정안은 ① 반도체배치설계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 기술에 관한 민사 항소사건, ② 지식재산 민사가처분 항고사건, ③ 지식재산 형사 항소 또는 항고사건 ④ 「특허법」 등에 따른 특허 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항소사건, 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소송 사건의 항소사건 중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을 특허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28조의2,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u>제28조의4제2호</u> 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제28조(심판권) ----- ----- . ----- <u>제28조의4제2호부터 제7호까지</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부) ① (생략)	제28조의3(부)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u>제27조제3항</u> 을 준용한다.	② ----- <u>제27조제3항 및 제4항</u> -----.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제28조의4(심판권) ----- -----.

1. (생략)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
사건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 (현행과 같음)

2. -----제24조제1
항 및 제2항-----

3. 「민사집행법」 제303조제2
항에 따른 사건의 항고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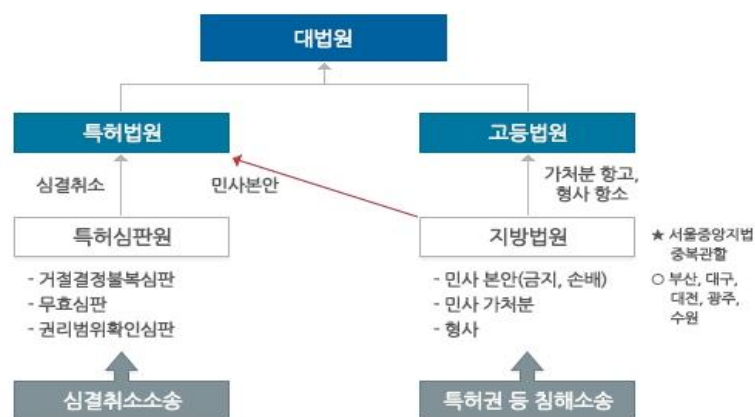
4. 「형사소송법」 제4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사건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다만,
「형사소송법」 제4조의2에
따른 법원 외의 법원에서 재
판한 사건의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에
한정한다)

5.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
법」(이하 “산업재산권법”이
라 한다) 및 산업재산권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한 처분
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의 항
소사건

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이

상표권·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함)의 침해에 따른 민사
본안사건²⁾(이하 “침해소송”이라 함)에 대한 항소 사건 또한 심결
취소소송³⁾과 같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임⁴⁾.

<특허소송의 구조>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85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법률 제13521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 특허권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침해금지청구 등
- 3) 특허권등의 유·무효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을 말함.
- 4) 종전에는 특허권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전국 23개원의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관할하고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가지고 있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특허법원 연도별 사건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600건 이상의 사건이 특허법원에 접수되고 있음.

< 특허법원 연도별 사건 통계 >

연도별	구분	접 수
	2021년	724
	2022년	704
	2023년	642
	2024년	798
	2025년	606
	2026년 1월~5월	305

자료 : 법원행정처

- 개정안은 심결취소소송 및 침해소송 항소 사건 외에 ① 반도체배치 설계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부정경쟁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의 영업비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 및 같은 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민사 항소사건(제2호)⁵⁾, ②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가처분 항고사건(제3호)⁶⁾, ③ 지식재산권 등 형사사건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⁷⁾(제4호), ④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5호,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3호,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4호,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의 항소사건(제5호), 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소송 사건의 항소사건 중 제4조제1항제1호8)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제6호)을 특허법원의 심판권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특허법원의 심판권 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안 제28조의4 제2호·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해당 지방법원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제5호9)·제6호10)에 해당하는 사건은 대전고등법원 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현재 특허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어 있는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반도체배치설계권 등에 대한 분쟁의 경우 특허 침해와 함께 제기 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특허 사건만 특허법원에서 관할하고 나머지

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권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9) ‘특허출원무효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 ‘등록취소처분취소’, ‘반려처분 취소 청구’, ‘우선권주장무효 처분 취소’등이 있음

10) 무역위원회 판정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무역행위판정 취소 청구의 소’,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공표명령 등 취소’등이 있음

사건의 경우 일반 고등법원에서 심리할 경우 소송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분쟁 해결이 어려우므로 특허법원이라는 전문적 사법 자원을 활용하여 판결의 일관성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취지임.

- 특허법원의 심판권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가 산업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 법원이므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집중시켜 판결의 전문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특허법원이 대전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그 외 지역 당사자의 경우 항소심을 위하여 지역 관할 항소심 관할법원이 아닌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증가할 수 있고, 특허법원 사건 대리인의 경우 기술적 전문성이 강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대형 로펌이나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등 중소기업이나 개인 소상공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지적재산권 분쟁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진이라는 입법취지와 함께 특허법원으로 형사 또는 행정 관련 사건의 항소 또는 항고심의

집중으로 인한 효율성, 사건 관계인들의 사법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임.

또한, 특허법원의 심판권 대상의 추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5호,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3호,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4호, 김정재의원대표발의) 안의 심사 내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외국 사례¹¹⁾를 살펴보면, 미국은 특허법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을 설립하고, 특허 침해소송, 특허 무효 확인소송에 관련된 사건의 항소심, 특허청(USPTO)의 심결이나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조치 등에 대한 불복사건에 대한 전속관할을 가지고,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은 동일한 법원에 속하게 되어 특허권 침해에 관한 본안소송에서의 항소심뿐만 아니라 가처분신청 항고사건의 전속 관할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귀속됨.

11)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 독일의 연방특허법원은 무효심판 등의 심결취소소송을 담당할 뿐이고 침해소송 등은 주 지방법원과 주 고등법원이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 지적재산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도쿄 고등재판소의 특별지부로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치하였고,

특허청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뿐만 아니라 기술형 사건, 즉 특허권, 실용신안권,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이용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소송의 항소사건도 전속관할로 함.

다만, 특허침해 금지가처분 사건은 도쿄 지방재판소와 오사카 지방재판소의 관할로 되어 있고 도쿄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전속관할 대상은 아님.

민사소송의 항소사건 중에서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프로그램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는 제외), 출판권, 저작인접권, 식물의 품종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육종자의 권리,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침해와 관련된 소송의 항소사건에 대해서는 제1심 재판소의 소재지에 따라 전국 8개의 고등재판소 중 관련된 고등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게 되고, 해당 항소사건들이 도쿄고등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도쿄고등재판소의 특별지부인 지적재산고등재판

소의 관할로 함.

- 법원행정처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취지에 대하여 공감하고, 관할 집중의 필요성, 해당 사건의 특수성,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특허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 개정안은 특허법원의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의3(부) ① (생략) ②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u>제27조제3항</u> 을 준용한다.	제28조의3(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27조제3항</u> 및 <u>제4항</u> -----.

-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주민들의 재판 편의를 위하여 고등법원 청사 외에 있는 지방법원 소재지에 설치·운영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로서 현행법 제27조제4항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현재 고등법원은 전국 6곳(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에

설치되어 있고, 7개의 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음.

<원외재판부 설치 현황>

소속 고등법원	설치된 원외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

- 개정안은 특허법원의 경우에도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법원의 소재지인 대전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여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취지임.

다만, 특허소송은 고도의 기술적·전문적인 이해를 요함에 따라 판사간의 유기적인 의견 교환과 연구 및 기술심리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원외재판부가 생길 경우 이러한 인적 인프라의 시너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고, 유사한 기술이나 쟁점을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판결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등 국가 전반의 지식재산 분쟁 해결 기준으로 통일하고 전문성을 고도화를 위하여 특허법원을 설치하고 관할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오히려 퇴색시키고 분산 구조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허법원의 관할 사건 확대에 따라 원외재판부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 할 경우 오히려 현행법과 같이 일반 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 용이성 및 법원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법원행정처는 특허법원의 관할집중 대상 확대에 따른 소송당사자의 사법접근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의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특허법원의 연간 접수 사건수, 원외재판부의 예상 접수사건 수, 특허법원의 설립 취지 및 관할 집중의 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71

참고자료 1 원외재판부 설치 현황

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재판부 수	비고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1민사부· 제2가사부	검임
		제2민사부 제1행정부	검임
		제3민사부	
		제1형사부· 제2형사부	
		제1가사부· 제2행정부	검임
		민사조정	
	춘천	제1재판부 (민사·형사·가사·행정)	검임
		제2재판부 (민사·형사·가사·행정)	검임
		민사조정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민사부 제1형사부 제2가사부 제2행정부	검임
		제2민사부 제2형사부 제1가사부 제1행정부	검임
		제11형사부	재정신청
		조정전담	
부산고등법원	울산	제1행정부 제1형사부 제2민사부 제2가사부	검임
		제1민사부 제1가사부 제2행정부 제2형사부	검임
	창원	제1행정부 제2형사부 제3가사부 제3민사부	검임
		제1민사부	
		제2민사부	
		제1형사부 제1가사부 제2행정부 제4민사부	검임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 제2형사부 제2행정부	검임

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재판부 수	비고
		제1형사부	성폭력 범죄 전담재판부
		제1행정부 제2민사부 제2가사부	겸임
		제3민사부	
		제1가사부 제4민사부	겸임
		제3형사부	
		제4형사부	
	제주	제1민사부 제1가사부 제1행정부 제1형사부	겸임
		제2민사부 제2가사부 제2행정부 제2형사부	겸임
		제3민사부 제3가사부 제3행정부 제3형사부	겸임
		제4민사부 제4가사부 제4행정부 제4형사부	겸임
		제5민사부 제5가사부 제5행정부 제5형사부	겸임

자료 : 법원행정처

참고자료 2 원외재판부 사건 접수 현황

법원별 구분	접 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월~5월
서울고등법원(춘천)	668	790	817	817	950	334
서울고등법원(인천)	828	813	817	952	2,703	1,179
대전고등법원(청주)	624	640	793	869	895	303
부산고등법원(창원)	1,209	1,216	1,367	1,421	1,489	573
부산고등법원(울산)	402	599	726	715	709	321
광주고등법원(전주)	706	697	852	882	857	312
광주고등법원(제주)	483	521	355	415	456	190

주 : 1. 본안사건(민사, 가사, 행정, 특허, 선거, 형사공판과 치료감호사건)의 합산임
 2. 민사, 가사, 행정, 특허, 선거사건은 사건 수, 형사공판과 치료감호는 인원수(명)기준임
 3.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2021. 3. 1. 시행(「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
 리에 관한 규칙」 제2898호)

자료 : 법원행정처

